

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

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,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.

| 1. 공사내용 | |
|--|--|
| 공사명 | 충북 음성 성본산업단지 B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|
| 공사 장소(주소) |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음성 성본 산업단지 B1 블록 |
| 공사의 종류 | 공동주택(V) 건축물() 도시철도() |
| 2.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| |
|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| 1. 옥상층 : 103동, 105동, 106동 |
| 중계장치 설치 위치 | 1. 옥상층 : 103동, 105동, 106동 2. 지하1층 : 팬룸 2개소 |
| 접지단자 위치 |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|
|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|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(총용량4kW 이상, 교류 220V, 단자 3개 이상) |
| 3. 공동주택(500세대 이상)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| |
|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| 입주자 모집공고문 |
|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| |
| ※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,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. | |
| 4.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|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(변경)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(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) ③ 건축물의 착공/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|
| 5.기타 협의사항 | "상세 협의 결과" 참조 |

※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,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[첨부]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.

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"전기통신사업법", "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"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
상호 협의하였음.

2021년 12월 22일

| 구분 | 법인/단체명(상호) | 대표자(성명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건축주 | 오제이피파트너즈 (주) | 김현석 |
| 대리인 | (주)하우드엔지니어 링종합건축사사무소 | 문홍길, 김성우, 채희 (연동의장) |

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

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
한국전파진용협회

상세 협의 결과

1.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

1. 옥상층 : 103동, 105동, 106동

2 중계장치 설치 위치

1. 옥상층 : 103동, 105동, 106동
2. 지하1층 : 팬룸 2개소

3. 기타 협의사항

● 상호 협의결과서 제4항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

- 건축주등*이 필수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 (신청내역서의 "착공통보" 항에 등록)

- ①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
- ② 정보통신 착공도면 1부
- ③ 착공예정일
- ④ 준공예정일
- ⑤ 공사요청일
- ⑥ 공사현장담당자 (이름, 연락처 등)

*건축주등 : 건축주 외 건축사, 건설사, 통신설계사, 시행사, 시공사 등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협의를 대표한 자

● 중계설비 설치시기 : 건축주 공사요청일 ~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를 하여야 함

※ 착공 후 준공예정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준공에 임박하여 입력하는 경우, 이동통신사 중계설비의 공사물자 확보(최소5개월 소요)가 불가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.

● 아래 <<주의사항>>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<주의사항>>

※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[상호협의결과서](#)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"이동통신 구내중계 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"를 참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서가 시공사(건설사)에게 반드시 전달되어, 건축물에 선로설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.

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

※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위치 공개 이후 설계변경 또는 현장시공 단계에서 협의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, 사업주체는 변동사항을 입주예정자(계약자)에게 재공지 하여야 함.

| 게시구분 | 게시방법 | 예시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견본주택 | 모델 하우스 | ① 단지 모형도에 "이동통신중계설비" 표지판 부착 |
| | | |
| | 사이버 견본주택/ 인터넷 홈페이지 | ② 견본주택 내 "상호협의결과서" 게시 |
| | | |
| | | ① 단지 조감도에 중계설비 설치 등 표시 |
| | | |
| | | ② 홈페이지 내 상호협의결과서 제공 |
| | | |
| | | ③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 게시 |
| | | |
| 입주자모집 공고문 | <p>● "유의사항" 등에 협의결과에 따른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위치(해당 동 등)를 빠짐없이 기술 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 및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 등에 의거,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.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,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.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-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: 101동, 104동, 108동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, 지하주차장 102동 훈룸, 105동 동통신실 | |